의안번호		제 173 호					
의	결	2015년 월	일				
연 월 9	일	(제 호	1)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5년 6월 1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73

제출연월일: 2015년 6월 1일 제 출 자: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익신고의 처리(안 제5조)
 - 공익신고 조사기간은 60일 이내, 조사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
-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6조)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안 제7조)
 - 공익신고 처리결과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 공익신고자 보호 등의 심의(안 제8조)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관련 사항 심의는 충청북도 공직자윤리 위원회에서 심의
- 우수기업 선정 및 우대(안 제10조, 제11조)
- 공익신고 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지원(안 제12조, 제13조)
 - 공익신고 처리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기반 구축사업 선정·지원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5.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 6. 비용추계서 : 붙 임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 2.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이하 "공익신고"라한다)의 처리,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이하 "공익신고자"라 한다)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도지사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나 국민 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경우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경우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①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도지사는 공익신고 처리 결과 충청북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법 제26조에 따라 국민 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동일한 원인에 따라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아니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공익신고자 보호 등의 심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은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우수기업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이나 사규로 규정
 -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한다.
- 제11조(우수기업 우대) ① 도지사는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우수기업에게 관련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세무조사, 소방·환경 등 각종 시설 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이나 구매 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그 밖에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도지사는 공익침해행위가 여러번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이나 해당 지역에 있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도지사는 환경조성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위하여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도지사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 제15조(민간협력)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 할 수 있다.
 -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 제16조(표창의 수여)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7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도지사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이 조례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를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로 한다.

관련법령 발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아니한다.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 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보상금) ①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 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

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육체적 ·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1. 「농산물품질관리법」
-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식품위생법」
- 4. 「자연환경보전법」
-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6. 「폐기물관리법」
- 7. 「혈액관리법」
- 8. 「의료법」
- 9. 「소비자기본법」
-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2.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
- **제3조(행정처분의 범위)**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 등을 취소·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 2. 영업·업무·효력·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 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 제21조(보상금 지급 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판결을 말한다.
 -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4.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 5.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3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正本)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결정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아직 시작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이 이미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제24조(보상신청의 경합 시의 보상금 결정) ① 하나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공익신고를 한 경우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을 산정할때에는 이를 하나의 공익신고로 본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각각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신고자별로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 **제26조(구조금 산정 기준)**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육체적 · 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 · 입원 · 투약 · 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 2.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 · 노무사 등의 수임료
 -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 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 제27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구조금 지 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별표 1]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 관련)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가축전염병예방법」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 「개항질서법」

- 6. 「건강검진기본법」
-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8. 「건설기계관리법」
- 9. 「건설기술관리법」
- 10. 「건설산업기본법」
- 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12. 「건축사법」
- 13. 「검역법」
- 14. 「경비업법」
- 15. 「계량에 관한 법률」
-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17. 「골재채취법」
- 18. 「공연법」
- 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20. 「공인중개사법」
- 21. 「관광진흥법」
- 22. 「광산보안법」
- 2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24. 「교통안전법」
-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26. 「국가기술자격법」
- 27. 「국민건강증진법」
- 2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9.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30. 「궤도운송법」
-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3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3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3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35. 「내수면어업법」
- 3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3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38. 「농약관리법」

- 39. 「농어촌도로 정비법」
- 40. 「농어촌정비법」
- 41. 「농지법」
- 4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44. 「대기환경보전법」
- 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4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48. 「도로교통법」
- 49. 「도시가스사업법」
- 50. 「도시철도법」
- 5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5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53. 「말산업 육성법」
- 54. 「먹는물관리법」
- 5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6. 「문화재보호법」
- 5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5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59.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6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6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62. 「보험업법」
- 6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64. 「비료관리법」
- 65.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 66. 「사료관리법」
- 67. 「산림보호법」
- 6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69. 「산업안전보건법」
- 70. 「산업표준화법」
- 71. 「산지관리법」

- 72. 「상호저축은행법」
- 73. 「새마을금고법」
- 74. 「석면안전관리법」
- 7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76. 「선박안전법」
- 7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78.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79. 「소방시설공사업법」
- 8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1. 「소하천정비법」
- 82. 「송유관 안전관리법」
- 83. 「수도법」
- 8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8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86. 「수산업법」
- 87. 「수산자원관리법」
- 88. 「수상레저안전법」
- 8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90. 「습지보전법」
- 9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92. 「식물방역법」
- 93. 「식품산업진흥법」
- 94. 「식품안전기본법」
- 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96. 「야생동·식물보호법」
- 97. 「약사법」
- 98. 「양곡관리법」
- 9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10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101. 「어장관리법」
- 102. 「어촌·어항법」
- 10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104. 「여신전문금융업법」

- 1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106. 「염관리법」
- 10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08. 「영유아보육법」
- 109.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110. 「원자력법」
- 1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11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11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1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116. 「의료기기법」
- 1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118. 「인삼산업법」
- 1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120. 「자격기본법」
- 121. 「자연공원법」
- 122. 「자연재해대책법」
- 12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12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12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126. 「전기공사업법」
- 127. 「전기사업법」
- 128.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12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130. 「전력기술관리법」
- 1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13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1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35. 「제품안전기본법」
- 136. 「종자산업법」
- 137. 「지진재해대책법」

- 138. 「지하수법」
- 139. 「직업안정법」
- 140. 「집단에너지사업법」
- 141. 「철도안전법」
- 142. 「청소년보호법」
- 143. 「청소년활동진흥법」
- 14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45. 「초지법」
- 146. 「축산물위생관리법」
- 14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148. 「친환경농업육성법」
- 149. 「토양환경보전법」
- 15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51. 「하수도법」
- 152. 「하천법」
- 153. 「학교보건법」
- 1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5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156. 「항공법」
- 157.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158. 「항로표지법」
- 159. 「항만법」
- 160. 「항만운송사업법」
- 16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6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63. 「해양환경관리법」
- 164. 「화장품법」
- 165.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166. 「환경보건법」
- 16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168. 「환경영향평가법」
- 16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170. 「식물신품종 보호법」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 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수당

3. 관련조문

- 안 제8조(공익신고자 보호 등의 심의)
 -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공직 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수당

나. 추계의 전제

-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 연 2회, 외부위원 7명

다. 추계결과 : '15년부터 향후 5년간 총 7,000천원 정도 소요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세 출	7,000	1,400	1,400	1,400	1,400	1,400
위원회 수당	7,000	1,400	1,400	1,400	1,400	1,400

※ 참석수당 : 외부위원 7명×100,000원(회의 2시간)× 연 2회 = 1,400,000원

6. 작성자 : 감사관 송재구